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64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김한규 · 진선미 · 박상혁
맹성규 · 박주민 · 이주희
임미애 · 김원이 · 위성곤
문정복 · 김태년 · 최혁진
문대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게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서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해제에”를 “해제 및 해지에”로 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 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심의회) ①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u>해제에</u> 관한 사항	7. ----- <u>해</u> <u>제 및 해지에</u>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u> <u>해지)</u>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u>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u> <u>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u> <u>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u> <u>심의회</u>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u>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u> <u>된 경우</u>

	<u>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u> <u>10년이 경과한 경우</u>
--	---